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⁵ A61L 15/03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 1992-0017672 1992년 10월 21일
--	------------------------	---------------------------------

(21) 출원번호	특 1992-0004077
(22) 출원일자	1992년 03월 12일
(30) 우선권주장	91-74038 1991년 03월 12일 일본(JP)
(71) 출원인	다케다야꾸히고오교가부시끼가이샤 모리따 가쓰라 일본국 오오사까시 쥬오구 도쇼오마찌 4쵸메 1방 1고
(72) 발명자	마쓰오까 마사요시 일본국 오오사까후 하비끼노 하비끼가오까 8쵸메 2-9 야마모토 요시노리 일본국 지바켄 우라야스 마이하마 2쵸메 25-18 야마다 마사유키 일본국 효오고켄 가와니시 다이와니시 2쵸메 11-6 가와지 도시꾸니 일본국 가가와 오카와군 오후찌쵸 미도노 136-106
(74) 대리인	이준구, 박해선

심사청구 : 없음

(54) 의약품 점착물(adhesives)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의약품 점착물(adhesive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제2도는 실험예에서 대조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3도는 실험예에서 비교예의 의약품 점착물의 이용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B-A블록 공중합체, 점착부여제, 오일성분, 친수성 중합체 및 물을 포함하는 기재 및 상기 기재에 혼입된 디솔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품성분으로 구성되는 의약품 점착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B-A블록 공중합체의 블록 A가 경질 중합체 유니트이고, 블록 B는 연질 중합체 유니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점착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블록 A가 비닐 화합물 중합체 유니트이고 블록 B는 공역 디엔 공중합체 유니트임을 특

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블록 A의 분자량이 $1,000 \sim 50 \times 10^4$ 이고 블록 B는 분자량은 $5,000 \sim 20 \times 10^4$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블록 공중합체가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또는 메틸스티렌-이소프렌-메틸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블록 공중합체가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공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점착부여제가 로진, 로진 유도체, 페트롤룸 탄화수소 수지, 수소화 페트롤룸 탄화수소 수지, 쿠마론 수지, 테르펜 수지 또는 페놀계 수지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점착부여제가 지환족 포화 탄화수소 페트롤룸 수지 또는 수소화 폴리테르펜 수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오일 성분이 액상 고무, 파라핀 오일, 나프텐 오일 또는 왁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수용성 중합체 및/또는 물로 팽윤될 수 있는 수팽윤성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젤라틴, 만나, 검, 스타치 유도체,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 아크릴산염, 알진산염, 아크릴 중합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수용성 중합체, 또는 그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수팽윤성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폴리(비닐 알코올), 스타치 유도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검 및 그의 공중합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폴리(비닐 알코올)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디솔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활성 비타민 B₁유도체 또는 그의 염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활성 비타민 B₁유도체 및 그의 염이 티아민 프로펠 디솔파이드,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솔파이드 및 티아민 6-메톡시카르보닐-1-아세틸티오펜틸 디솔파이드 및 그의 염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활성 비타민 B₁유도체 또는 그의 염이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솔파이드 또는 그의 염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솔파이드 염이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솔파이드 히드로클로라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기재가 A-B-A블록 공중합체 5~40중량%, 점착 부여제 10~50중량%, 오일 성분 5~30중량%, 친수성 중합체 0.1~10중량% 및 물 1~40중량%로 구성되고 상기 기재에 디솔파이드 결합을 갖는 의약 성분을 혼입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기재에 혼입된 의약 성분의 비율이 0.01~10중량%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개재가 산화 방지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기재중의 산화방지제 비율이 0.01~2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기재가 *l*-멘톨, *d**l*-캄포르, 메틸 살리실레이트, 글리콜 살리실레이트, 바닐릴노닐아마이드, 분말상 펠로덴드론, 고추추출물, 디펜히드라민 히드로클로라이드, 클로르페니르아민 말레이트, 암모늄글리시르레티네이트 및 비타민 E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3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점착부여제, 액상 고무, 산화방지제, 폴리(비닐 알코올) 및/또는 수팽윤성 중합체 및 물을 포함하는 기재, 및 상기 기재에 혼입된 디설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기재가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5~40중량%, 점착부여제 10~50중량%, 액상 고무 5~30중량%, 산화방지제 0.01~2중량%, 폴리(비닐 알코올) 및/또는 수팽윤성 중합체 0.1~10중량% 및 물 1~40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기재중에 디설파이드 결합을 갖는 의약성분이 0.01~10중량%의 비율로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디설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활성 비타민 B₁ 유도체 또는 그의 염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디설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설파이드 또는 그의 염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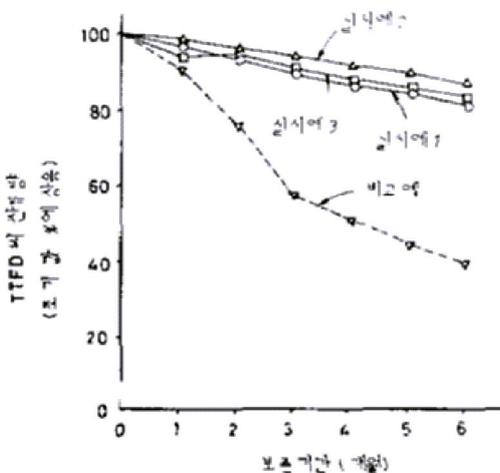
청구항 27

기재 쉬이트, 디설파이드 결합이 있는 의약 성분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기재층 및 상기 기재층을 도포하고 거기서 박리될 수 있는 필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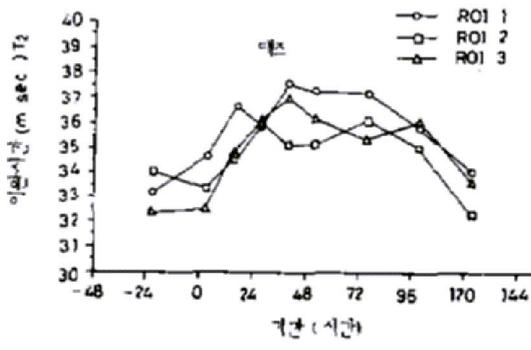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